

더샵 분당티에르원 중도금 대출 안내

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- 대출신청(신청 기한) : 2026.03.08(일) ~ 03.09(월) (10시~16시)

비대면(인터넷뱅킹, KB스타뱅킹) 대출신청은 2026.03.03 ~ 03.09 까지 신청가능
※비대면 신청고객도 접수장소 방문하여 서류제출 필수(본인 방문, 대리인 서류제출 불가)

- 접수장소 : 정자푸르지오시티2차 오피스텔 지하1층 [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7 지하1층]
※ 주차장이 협소하오니,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일자별 중도금대출 신청 일정

-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동별 분산하여 운영하오니 분양자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해당일자에 맞추어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방문일자	방문세대
3월 8일(일)	301동 ~ 307동
3월 9일(월)	308동 ~ 312동

- 중도금대출 취급점 : KB국민은행 분당정자 지점

- 대출금리 : 별도 안내 예정

- 대출부대비용 : 대출실행일에 KB국민은행 본인 계좌에서 인출 (대출 실행 전 영업일 본인계좌 잔고유지)

구분	내용	비고
주택보증서 보증료	대출보증금액 X 보증료율(연0.13%) (회차별 선납)	비용부담 : 고객
수입인지비용	※ 대출금 5천만원 이하 : 비과세 ※ 대출금 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 : 7만원 (고객부담 3만5천원) ※ 대출금 1억원 초과~10억원이하 : 15만원 (고객부담 7만5천원) ※ 대출금 10억원 초과 : 35만원 (고객부담 17만5천원)	은행과 고객이 각 50% 부담

● 준비서류 (1개월 이내 발급분) ※모든 서류 內 기재정보는 마스킹처리 없이 전체공개 필수

구 분	내 용	
방문대상	① 분양계약자, 공동명의자 방문 필수 [※ 단독명이라도 배우자 소득 합산하는 경우 배우자 방문 필수]	
준비서류	① 분양계약서 원본 ②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(전매 시 제출) ③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※모바일신분증 사용불가) ④ 주민등록등본 1부(세대원포함/세대주와의 관계표시/본인기준 발급) •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: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(세대원포함/세대주와의 관계표시) ⑤ 주민등록등본상 미성년 세대원 보유시 : 기본증명서(상세) (미성년 세대원 기준으로 각각 제출) ⑥ 주민등록초본 각1부 :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(미성년자 포함) (성명/주민번호 변경사항 포함) •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 :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(자녀, 손주) 및 그의 배우자 전원 각각 제출 ⑦ 가족관계증명서(일반) : 본인기준 발급 ⑧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 이력) : 분양계약자 ⑨ 주택임대사업장 보유시 : 사업자등록증 및 구청발급 임대사업자등록증 ⑩ 증여 또는 전매 시 : 증여계약서, 매매계약서	
소득서류	직장인	① 재직증명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최근 2개년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개년, 단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함) ☞ 12개월미만 재직자의 경우 근무개월분의 급여명세표 또는 원천징수확인서로 소득증빙 가능 ※ 소득증빙서류에는 소속회사 명판·직인날인 필수
	사업자	① 사업자등록증 ② 소득금액증명원(최근 2개년) ☞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발생처 공개여부에 “여”로 표시되어야 함 ※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신규사업자는 건강·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방법 동일)
	연금소득자	①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지급기관의 증명서 ② 연금지급내역서(1개년이상)
	소득증명이 어려운 경우	① 다음 중 택 1 - 국세청 사실증명(직전년도 소득신고사실 없음) -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) -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사업개시하였으나 입증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소득자(사업자등록증명원) - 부부합산 소득이 24백만원 이하인 경우 (본인 및 배우자 소득서류 제출) ☞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필수 ② 다음 중 택 1 - 신용카드사용확인서(연말정산 소득공제용, 카드사 구분없음) 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최근 3개월)
계좌 확인서류	고객 본인의 KB국민은행 통장사본 제출 또는 자서현장에서 신규 ☞ 정상계좌만 사용 가능함(거래중지여부등 확인요망)	

※ 은행 심사 결과 또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보증료 및 보증료 할인 안내

- 기본 보증료율(단일요율) : 연 0.13% (해당 단위사업의 집단취급승인일 기준으로 적용)
- 보증료 할인 안내 (중복할인 불가능,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보증 매뉴얼 기준, 20.12.18)

할인 대상(율)	자격요건	확인서류
저소득가구 (40%)	보증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40백만원 이하	① 소득확인서류 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 ②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배우자 또는 보증신청인의 소득여부 확인용) ※ 배우자 소득서류 추가 징구 (3Page 소득서류 참조) (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'직장인 피부양자' 인 경우 생략)
다자가구 (40%)	보증신청인의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	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장애인가구 (40%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가구	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증명서 (또는 복지카드) (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·군수·구청장이 발급)
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(40or60%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가구 또는 노인부양가구 ※ 노인부양가구는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동일세 대를 구성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	- 주민등록등본 ※ 만65세 이상의 독거세대일 경우 60%, 그 외 40% 할인
신혼부부 (40%)	배우자 포함 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이고, 혼인기간 7년 이내 (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)	① 혼인관계증명서 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, 예식장 계약서) ②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※ 배우자 소득서류 추가 징구 (3Page 소득서류 참조) (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'직장인 피부양자' 인 경우 생략)
한부모가족 (60%)	보증신청인이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	- 한부모가족증명서
다문화가족 (40%)	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배우자 있는 보증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가구	①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※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(출입국관리사무소) ②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국가유공자 (40%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인 세대원중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	- 독립유공자(유족)확인원 - 보훈보상대상자(유족)확인원 - 국가유공자(유족)확인원 - 5.18민주유공자(유족)확인원 -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- 특수임무유공자(유족)확인원 - 지원대상자(유족) 확인원
의사상자 (40%)	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해당하는 경우	- 의사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사자 증서 - 의상자(유족)증 사본 또는 의상자 증서
모범납세자 (10%)	보증신청인이 국세청 표창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에 정부 포상 또는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한 자로서 우대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	- 모범납세자 증명서(1개월 내 발급분) ※ 산업훈장, 산업포상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기획재정부장관표창, 국세청장표창에 한함

※ 세부사항은 보증기관 홈페이지 참조 (주택도시보증공사 <http://www.khug.or.kr>)